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40875 판결 [약정금 및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피고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진실

2. C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9. 9. 20.

판결 선고2019. 10.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2,332,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6,709,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 위 피고가 95%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하여 : 피고 B은 원고에게 23,972,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하여 :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및 원고의 공제금 지급

- 원고의 피공제차량과 피고들의 각 피보험차량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2016. 11. 27. 06:40경
장소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39번 국도 발안에서 안중 방향
사고 경위	- 노면이 결빙된 편도 2차로 도로상에 피고2 차량이 오른쪽으로 전도된 상태로 있었다.- 원고 택시가 직진하다가 피고2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2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 받은 후 도로상에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1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2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원고 택시의 승객인 G, H가 각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원고 택시에 관한 공제계약에 따라 2017. 2. 14.까지 G과 그 치료 병원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8,173,800원을, 2017. 7. 10.까지 H와 그 치료 병원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36,490,8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회에 관한 상호협정(갑 9호증,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협정인데(이 사건 협정 제1조), 이 사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협정당사자이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해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 ① 이 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구상분쟁의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심의청구의 방식, 비용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소 등)

-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제28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 원고는 피고 B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에 관한 분쟁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1. 29. 심의 결과 ① '책임비율'과 관련하여 원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35%, 피고1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50%, 피고2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5%로 각 정하고, ② '결정금액'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22,332,315원[=44,664,630원(=8,173,800원 + 36,490,830원) × 50%]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은 이 사건 협정 제27조에 따라 2018. 2.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1호증, 을가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들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회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양측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이 사건 협정 제28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 이 사건 협정 제27조에 따라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내용대로, ① '책임비율'과 관련하여 원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35%, 피고1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50%로 각 정하고, ② '결정금액'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22,332,315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22,332,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1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히 하여 미리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음에도 도로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웠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자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시 현출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이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한 바 없었음이 명백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를 취소하는 바이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며,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택시 운전자와 피고1 피고차량 운전자의 각

책임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뿐(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다589 판결 참조), 이를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1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및 효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22,332,3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8. 2. 23.(피고 B은 이 사건 협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2. 23.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7. 6.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관한 원리금을 23,972,058원(원금 22,332,315원 + 지연손해금 1,639,743원)으로 산정하여 구하나, 위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연 15%로 적용하여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종전에 연 15%였다가 2019. 6. 1.부터 연 12%로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원고 택시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 중 피고2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 15%에

따른 구상금 6,709,68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인 2017. 7.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다.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할 것을 구하나,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이상윤